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85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박은정 · 황운하 · 박지원
김재원 · 신장식 · 최혁진
전용기 · 강경숙 · 백승아
진선미 · 김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반헌법적·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로 제주4·3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삼청교육과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8.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함이 인정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의결로 제주4·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
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삼청교육과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8.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
함이 인정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